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관리 지원 근거 마련〉
■ 김정재의원(의안번호 제2212226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7
1. 「수도법」상 수도시설 관리	7

I. 제안경위

2025년 8월 19일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노약자와 같은 건강취약자들은 수돗물 수질이 악화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환경부장관은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수돗물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실시간측정 및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수돗물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상시측정 및 실시간 수질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33조제6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항목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	⑥ <u>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수돗물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상시측정 및 실시간 수질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u> ⑦ -----제6항----- ----- ----- ----- ----- ----- ----- -----

현행	개정안
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현행법¹⁾은 수도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하여 소독,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

1)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수도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36조제1항에서 같다)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0. 그 밖에 안전한 수도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항목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점포,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노약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수돗물 수질이 악화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수돗물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상시측정 및 실시간 수질정보의 제공 등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의 건강권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입법례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²⁾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법」상 수돗물 수질 등 관리·책임 주체는 민간시설 계량기까지는 수도사업자(지방자치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단체)이며, 계량기 이후 급수시설은 시설 소유자이므로, 어린이, 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을 수용하는 시설일지라도 수돗물 수질관리 및 정보제공의 책무는 해당 시설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린이, 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수돗물 관리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면 「학교보건법」³⁾,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등에서 규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48

3)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라 2025년 실시간 수돗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중(교육비 특별회계 50억원)

※ 참고자료

1. 「수도법」상 수도시설 관리

□ 수도시설의 관리(법 제21조)

- (일반수도사업자) 정수장에서부터 대지경계선 안의 계량기까지 수도시설
- (수돗물 공급받는자)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

「수도법」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수도법 시행령」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 다음 각 목의 자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나. 가목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설비 :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 위생상의 조치 개요(법 제33조)

- (관리대상)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 (관리내용)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에 대하여 청소(저수조), 위생점검, 수질검사, 세척·갱생(옥내급수관) 등 주기적으로 위생상 조치

구분	저수조	옥내급수관
법적근거	법 제33조제3항, 영 제50조, 규칙 제22조의4	법 제33조제4항, 영 제51조, 규칙 제23조
대상 건축물	연면적 5천㎡이상, 연면적 2천㎡이상의 둘 이상의 용도 등	연면적 6만㎡이상(대규모점포, 아파트 등), 연면적 5천㎡이상(의료시설, 학교, 노유자시설 등) 등
법적의무 (위생조치)	(위생상태 점검) 월 1회 이상 (청소) 반기 1회 이상 (수질검사) 연 1회 이상	(일반검사) 준공 5년 이후 매 2년마다 수질검사(기준 초과시 세척·갱생) (전문검사) 일반검사 초과시 현장조사

- (지원사항) 조례에 따라 저수조 수질검사 비용의 일부 지원 가능, 급수설비의 세척·갱생·교체 비용 보조·용자 가능
- (지도감독)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형건축물의 위생상의 조치 여부 지도감독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